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취업)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2024.01.01.~ 수급자격 신청자)

1. 수급신청일 기준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퇴사일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이상)계속 고용된 경우
2. 취업한 대상자가 기준임금(574만원/월)미만 소득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3. 재취업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의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0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례) 「90일의 경우 45일 이상」, 「120일의 경우 60일 이상」, 「150일의 경우 75일 이상」, 「180일의 경우 90일 이상」, 「210일의 경우 105일 이상」, 「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 「270일의 경우 13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에 유의.
4. 12개월 내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평일)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단절 없이 12개월(65세이상 6개월)이상 계속 고용시 최초 입사일 기준 잔여일수 산정
사례) 2024.6.30.일 이직 → 2024. 7. 1. 재입사(O), 2024.6.30. 이직 → 2024. 7. 6 재입사(X)
- 4-1.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재취업일로부터 월10일 이상 12개월간 연속 근무한 경우
5.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재취업일과 재취업일 기준으로 2년 이내)
6. 수급자격(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었던 경우가 아닐 것
7.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동일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
- 이직 전 사업이 인수.합병.분할되거나 영업을 양도.양수하였을 경우 인수.합병.분할 또는 영업을 양수한 사업의 사업주
-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학교회계직원 등이 같은 시.도 소재 국.공립학교에 재입사하는 경우(사업주가 시.도교육감으로 동일)
8. 자영업자 (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예술인, 노무제공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9. 기타사항
-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 . 비상임(근) 이사.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비해당
- 공무원으로 채용시 조기재취업수당 비해당(다만 별정직, 임기제공무원으로 취업한 경우 제외)

2. 제출서류(시흥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①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②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장에서 발급한 것으로 12개월(만 65세이상자는 6개월)이상 근로사실이 확인)
- ③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생략 가능하나, 고용보험 이종 취득, 미신고 시 지급이 지연됨)
※심사과정 중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청구방법

방문, 인터넷(www.ei.go.kr 또는 www.work24.go.kr - 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팩스접수 가능
[문의 ☎ : 031-496-1939, 팩스 : 0508-8230-0328]

4.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재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 1/2

5. 유의사항

- ① 근무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함.(임의가입대상자 제외)
- ② 재취업 후 12개월(만 65세이상자는 6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③ 청구시점 : 취업일 기준 12개월(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대상자는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3년 이내
- ④ 사전신청 대상 : 퇴사일 기준 만 65세이상 수급자중 6개월이상 계속 근로가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취업일부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다만, 6개월이상 계속근로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상 근로이후 신청이 가능)
- ⑤ 수급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인정 창구에 <재실업신고> 해야 함.
- ⑥ **처리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실제 약 3주 소요)

조기재취업수당 안내-(자영업)

1.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조건(2024.01.01.~ 수급자격 신청자)

- 대기기간(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12개월(이직일 기준 65세이상자는 6개월) 이상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한 경우만 해당
 -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함(12개월 분)
 -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퀵배송, 컴퓨터프로그래머, 샵매니저, 자동차딜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12개월 분)
 -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비영리사업(교회, 복지시설 등)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업의 경우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 비영리 사업을 영위한 경우라도 소득 정기적 발생과 상근 등 안정적 재취업 경우 조기 재취업 수당 가능
- 사업개시일로부터 수급종료일까지 잔여급여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남아 있어야 함.
사례) 「90일의 경우 45일 이상」, 「120일의 경우 60일 이상」, 「150일의 경우 75일 이상」, 「180일의 경우 90일 이상」, 「210일의 경우 105일 이상」, 「240일의 경우 120일 이상」, 「270일의 경우 13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함에 유의
- (중요)실업인정 담당자에게 사전에 미리 ①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 ② 해당 계획에 따라 자영업 활동을 한 후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 내역으로 1회 이상 반드시 실업인정을 받은 후 그 계획대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만 가능(전산확인)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제①항 2호 적용
-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취업일 기준)
- 자영업자(자영업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 예술인, 노무제공 실업급여수급자가 아닐 것
-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실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지급 불가

※ 위 지급조건 모두 충족 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만 65세 이상자는 6개월)이후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이직일 기준 65세 이상 자의 경우 창업시점부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2. 제출서류(시흥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가능)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통계현황

※ 간이과세자 및 면세사업자는 ③, ④를 대신하여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 내역

-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직종별 제출 서류 >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위촉증명서, 영업수당에 따른 수당명세서 사본(12개월 분)
- 자유소득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서, 수당 입금내역(12개월분), 사업장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증빙서류 등
- 개인택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택시조합비 납부영수증 및 주유 및 (전기 및 가스)충전영수증 등(12개월 분)
- 개인용달의 경우: 개인택시와 상동,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화물운송 조합비 납부영수증(12개월 분)
-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원채용 입증자료(근로계약서 또는 급여지급 내역[12개월], 사업 계속 운영하였음을 입증하는 단체명의 통장 거래 내역

※ 사업영위 증빙서류는 연속적으로 12개월분이 제출되어야 함.

3. 청구방법

방문, 인터넷(www.ei.go.kr 또는 www.work24.go.kr - 첨부자료 스캔하여 업로드), 팩스접수 가능

[문의 ☎ : 031-496-1939, 팩스 : 0508-8230-0328]

4.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재취업일~수급기간만료일) × 1/2

- 퇴사일 기준 65세이상 이상자의 경우, 6개월 이상 사업 운영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취업신고시 사전신청이 가능함.
- 실업인정 신청 시 자영업 준비활동 내역과 실제 영위한 사업의 연관성이 없을 경우 부지급
- 처리기한 : 서류 접수일로부터 공휴일 제외 14일 (실제 약 3주 소요)